

#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김철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91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10. 21.  
발의자 : 김철민 · 김영배 · 박찬대  
서동용 · 서삼석 · 서영교  
안민석 · 유기홍 · 윤영덕  
이탄희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교직원공제회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·운영지침」(이하 “운영지침”이라 함)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정보처리장치(이하 “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”이라 함)를 통하여 학교 등 수요기관과 중·소상공인 위주 공급업체를 연계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였음.

그런데 법제처에서 운영지침의 수수료 부과근거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이므로 법령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에 따라, 2021년 2월 10일 운영지침이 수요기관으로부터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, 이후 공급업체에 대한 수수료 부과가 2021년 4월 1일부터 중단됨으로 인해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지속이 어려워진 상황임.

이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·운영

③ 공제회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사업) ① 공제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  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② (생 략)  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1조(사업) ① -----  -----  -----.  1. ~ 3. (현행과 같음)  <u>4.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·운영</u>  ② (현행과 같음)  <u>③ 공제회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</u></p>